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57
------------	-------

발의연월일 : 2023. 9. 22.

발의자 : 홍석준 · 김용판 · 하영제

김태호 · 류성결 · 지성호

조경태 · 김예지 · 최영희

백종현 · 이주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생명연구자원법」은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고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급변하는 생명공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생명연구자원의 확장성을 고려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조제2호의2 신설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 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3호 개정).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기탁등록을 하려는 연구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고시 또는 공고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에 국한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과 관련 신규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사업의 신청 시에도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등).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를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

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

다. 그 밖에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중 “해당 사업”을 “해당 사업과 관련 신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생명연구자원”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으로, “방법”을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p> <p>2. (생 략) <신 설></p>	<p>제2조(정의) -----.</p> <p>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인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을 포함한다)</p> <p>나. 가목을 이용하여 파악된 사실 등의 정보(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다)</p> <p>다. 그 밖에 생명공학연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2. (현행과 같음)</p> <p>2의2. “생명연구데이터”란 생명공학연구 수행과정의 산출물을 광(光) 또는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p>

<p>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p> <p>4. (생 략)</p> <p>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 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p> <p><u><신 설></u></p> <p>⑥ (생 략)</p> <p>제9조(기탁 및 등록 등) ① · ② (생 략)</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u>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p> <p>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p> <p>4. (현행과 같음)</p> <p>제8조(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 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공고할 수 있다.</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9조(기탁 및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해당 사업과 관련 신규사업-----.</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p>
--	---